

창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11802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118020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사천시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소10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4. 9. 13.

판결 선고 2024. 11. 2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소 10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표이자 어선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이 사건 어선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22. 11. 28. E와 별지 기재 근로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선급금 20,000,000원을 피고의 자녀인 F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상기 본인은 E 배우자로 E를 대리하여 2022. 11. 28. C으로부터 선급금 20,000,000원을 본인의 자녀통장(예금주: F)으로 입금받았으며 차후 E의 선급금을 포함하여 급여 및 가불금 등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받는 데 대하여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E의 결산금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 원고는 2022. 12. 16. F의 계좌에 1,130,000원(가불금), 2,470,000원(월고정금) 합계 3,6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3. 1. 16. 2,470,000원(월고정금), 3,530,000원(가불금)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E는 2022. 11. 28.경부터 이 사건 어선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1. 20.경

중도하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F의 계좌로 E의 선급금 등 합계 29,600,000원(= 2022. 11. 28.자 20,000,000원 + 2022. 12. 16.자 3,600,000원 + 2023. 1. 16.자 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23. 1. 20.경 E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하선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는 E의 선급금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29,600,000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고정급 2,47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2. 11. 28.부터 2023. 1. 20.까지 승선일수 54일분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E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고한 점을 고려하여 월 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54일분에 대한 임금 7,200,000원(= 4,000,000원 ÷ 30일 × 54일)을 공제한 나머지 22,400,000원(= 29,600,000원 -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F의 계좌로 29,6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나, 위 29,600,000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임금 6,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54일분 임금 10,800,000원(= 6,000,000원 ÷ 30일 × 54일), 2023. 9. 1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 2023. 6. 5.경 E가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숙식비, 교통비 등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00,000원(= 29,600,000원 - 10,800,000원 - 10,000,000원 -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등: 29,600,000원

원고가 F의 계좌에 선급금, 급여, 가불금 등으로 29,6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공제 항목에 관하여

1) 원고가 E에게 지급할 임금 가) 이 사건 근로계약 규정의 해석

이 사건 근로계약 제4항에는 '월고정급 2,4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4항에는 '선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하선할 경우 월고정급으로 일자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특약사항 제4항은 선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하선할 경우 '월고정급 2,47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6,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특약사항 제4항에서 '월고정급'이라고 규정한 것에 반하는 것인데다, 위 6,000,000원은 월가불금 3,530,000원(= 6,000,000원 - 월고정급 2,47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특약사항 제1항에 의하면 가불금은 '추후정산'되어야 하는 성질의 돈으로 E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가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하선한 것인지 여부

2023. 2. 5.경 원고는 E에게 2023. 1. 20. E가 개인 사정으로 하선함에 따라 정산금을 변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E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을 제4호증의 음성에 의하더라도 E가 중도하선하게 된 원인이 원고 때문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말에 의하면 일하는 분위기가 더 이상 기관장으로 일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하선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 점(피고의 2024. 7. 29.자 준비서면 1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23. 1. 20. E가 중도하선한 것은 E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월고정급 2,470,0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인정하는 월 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2. 11. 28.부터 2023. 1. 20.까지 승선일수 54일분인 7,200,000원(= 4,000,000원 ÷ 30일 × 54일)이 된다.

2) 2023. 9. 13.자 변제금: 10,000,000원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진행 중이던 2023. 9. 13.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숙식비, 교통비 등 700,000원 원·피고 사이에 2023. 6. 5.자 재근로계약(을 제1호증)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에 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E에게 E가 지출한 숙박비, 교통비 등을 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E가 당시 숙박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29,600,000원에서 임금 7,200,000원, 2023. 9. 13.자 변제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00,000원(= 29,600,000원 - 7,2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이진석

판사김상욱

별지